

문서번호 : PM본부2014-32

시행일자 : 2014.02.03.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참 조 :

제 목 : 과표기준가격 정정의 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사(행)에서 판매하고 당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과표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

-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 ①
- 미래에셋ChinaAShare증권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 ②

나. 정정사유

- 외화모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처분손익 계산 오류

다. 정정일자

- 2014년 2월 1일(토) 결산 과표기준가격 : ①
- 2014년 2월 3일(월) 영업일 과표기준가격 : ①,②

라. 정정내역

- '첨부1. 과표기준가격 정정내역' 참조

※본 건은 자본시장법 제89조(수시공시) 제1항에 근거한 수시공시 사항이며,
동 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.
(인터넷 홈페이지 공시/전자우편 이용/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)

* 첨부 : 과표기준가격 정정내역 1부. 끝.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대표이사 정상기



수 신 처 : 광주은행, 교보증권, 농협은행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동부증권, 동양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신한은행, 외환은행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하나은행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증권, HMC투자증권, IBK투자증권, SK증권(이상 가나다순)